대통령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우리는 새 헌법에 의하여 새 시대의 대통령을 선거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은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었읍니다.

대통령선거인은 일반 선거권자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들로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통령을 선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선거인을 선출하고 새 시대의 영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부탁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거권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합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가장 본질적인 주권행사의 방법이므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이나 정실, 기타 부정한 행위도 이를 배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후보자 여러분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은 대통령선거인 후보자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에 한하고,

대통령후보자는 선거공보·신문광고·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선거운동이 후보자마다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투표와 개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투표관리·개표관리 및 선거의 모든 절차를 직접 담당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위촉된 투표·개표사무 종사원 여러분은 엄정 중립을 견지하여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의 전 과정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법을 준수하여 새 시대에 부응하는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모든 과정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완벽한 공명선거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합시다.

1981년 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